

(주)한맥기술 어천-공주(4차)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2개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신 건설본부장(행정관리과장)

제목 건설공사의 하도급변경계약(철거공사) 통보에 따른 검토보고[어천-공주(4차)]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천 제2025-14호(2025.01.17.)의 관련입니다.
3. 「어천~공주(4차)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시공회사인 태화건설산업(주)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통보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서 1부.

2.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변경)통보서[태화건설산업(주)] 1부. 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송세화



제출자 2025.01.20.
송세화

시행 한맥어천제2025-012 (2025. 01. 20.) 접수

우 325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부당골길 50 어천~공주등 2개지구 건,
설사업단

전화번호 041-855-7391 팩스번호 041-855-7392 / swgamri1@hanmail.net / 비공개(6)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서

1. 공사 현황

- 가. 공사명 : 어천~공주(4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 나. 도급액 : 26,652,900,000원
- 다. 공사기간 : 2020. 12. 23 ~ 2026. 12. 21
- 마. 도급자 : 태화건설산업주(주)외 2개사

2. 하도급 계약 현황

당초/변경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철거공사	469,238천원	㈜진풍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024.03.19.	392,040천원	83.55%
	2024.12.31			344,300천원	92.96%	

○ 하도급 공사기간 : 2023.11-27~2024.12.31.(변경없음)

3. 검토결과 :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당초	변경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수원06-07-03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수원06-07-03	적정 (동일)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 평가액 : 40,470,835천원	○ 시공능력 평가액 : 41,047,161천원	적정
하도급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전문건설업 하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전문건설업 하도)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일 - 2023.11.23 ○ 계약통보일 - 2023.12.07	○ 계약일 - 2024.12.31 ○ 계약통보일 - 2025.01.17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 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서	○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서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계약보증서 - 보증서번호 : 제20232200-21017350호	○ 계약보증서 - 보증서번호 : 제20232200-21017350호	적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공사예정금액 : 30억원 미만 - 해당 직무분야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현장대리인 - 성명 : 정요셉 - 생년월일 : 90.05.04 - 등급 : 건축초급 - 경력 : 4.57년	○ 현장대리인 - 성명 : 정요셉 - 생년월일 : 90.05.04 - 등급 : 건축초급 - 경력 : 4.57년	적정 (동일)		
하도급 계획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 (하도급계획의 제출)	해당없음		-		
하도급률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82% 미만 적정성 여부 심사)	도급액	469,238천 원	도급액	370,370천 원	적정
		하도급액	392,040천 원	하도급액	344,300천 원	
		하도급률	83.55%	하도급율	92.96%	
하도급률의 적정 (예정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64% 미만 적정성 여부 심사) ※ 2019.03.26. 개정 전(60% 미만)	예정가격	473,886천 원	예정가격	385,821천 원	적정
		하도급액	392,040천 원	하도급액	344,300천 원	
		하도급률	82.73%	하도급율	89.24%	
공동 도급사 동의 여부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 수급인 서명확인		전자계약확인		적정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류 첨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2.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2. 공사내역서 첨부 3. 예정공정표 첨부 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첨부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2. 공사내역서 첨부 3. 예정공정표 첨부 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첨부	적정		
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 방지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에 관한 조례 제10조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 재 확인서 확인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 재 확인서 확인	적정		

4. 검토의견

- 가. 「어천~공주(4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기존교량 철거공사에 대한 원도급자의 설계변경 확정에 따른 실물량 정산 변경계약임
- 나. 원도급대비 하도급율이 92.96%, 예정가격대비 89.24%로 적정 하도급율보다 높으며 계약금액이 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 하지 않음
- 다. 상기와 같이 하도급 정산변경 체결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025.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송 세 화 (인)

